

## ① 사이버성폭력을 신고/고소하고 싶다면?

### 비동의 성적영상 유포/재유포 피해

- 재업로더 신고 시 피해 게시물 캡처, 게시자 ID 및 계정 캡처를 PDF 파일로 정리
- 모든 피해촬영물을 완벽히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
- 피해촬영물을 다운받아서 다시 유포하는 재유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이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음

### 불법도촬 피해

- 설치형 불법도촬**
  - 해당 카메라를 증거물로 보존하여 경찰에 신고
- 이동형 불법도촬**
  - 문자로 112에 신고접수 가능하며 지하철의 경우에는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방향을 발송
  - 저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한 것만으로 처벌가능

### 유포협박 피해

- 스토킹, 물리적 폭력 등의 추가적 가해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신변보호 요청 등의 제도 활용

###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피해

-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형태의 경우 대화방을 유지하고 있으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'대화 내용 이메일로 보내기' 기능을 이용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음
- 경찰 신고 시 화면에 상대방의 글, 아이피, 아이디, URL, 캡처날짜 등 가능한 모든 게 보이도록 캡처
- 게시판 목록 등 맥락을 알 수 있는 정보들도 저장
- 해당 플랫폼에 피해게시물 삭제 요청해서 피해 확대를 방지

## 📍 도움받을 수 있는 곳

###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기관

-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(02-817-7959, www.cyber-lion.com)
- 서울특별시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사업 관련 문의 (02-2133-5035)
- 한국성폭력상담소 (02-338-5801, www.sisters.or.kr)
-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(02-335-1858, www.womenlink.or.kr)
-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(02-2263-6465, www.hotline.or.kr)
- 여성긴급전화 1366 (전국 : 국번없이 1366, 서울: 02-1366, www.seoul1366.or.kr)
- 전국해바라기 센터(서울 권역)
  - 연세의료원 (02-3274-1375)
  - 경찰병원 (02-3400-1700)
  - 보라매병원 (02-870-1700)
  - 서울대학교 병원 (02-3672-0365)
  - 삼육서울병원 (02-3390-4145)
  - 국립중앙의료원 (02-2266-8276)
- ➡ 이 외에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의 전국 160여개의 상담소에서, 의료, 법률,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무료법률 지원기관

- 대한법률구조공단 (국번없이 132, www.klac.or.kr)
-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(02-3476-6515, www.legalaid.or.kr)
- 한국성폭력위기센터 (02-883-9284, www.rape119.or.kr)

#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



<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안내서>  
파일로 연결됩니다.

## ■ 사이버성폭력이란?

-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, 유포, 유포협박, 저장,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, 미디어,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
- 디지털 성폭력, 온라인/인터넷 기반 성폭력, 성적 이미지 조작/착취 성폭력, 온라인 기반 성매매, 온라인 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,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음

## ■ 사이버성폭력 유형

유형		예시
촬영물 이용 성폭력	촬영	·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 불법도촬(소위 몰래카메라)
	유포 /재유포	· 업로더(헤비업로더 포함) · 단독방, SNS, 포르노 사이트, · 커뮤니티 등에 유포 · 보복성 유포 · 지인능욕, SNS계정에 유포
	유포 협박	·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·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· 다시 본인과 사귀면 유포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 ·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
	유통/소비	· 웹하드,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·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
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		· 피해자 사진과 함께 성적인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 ·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(링크) 제공 ·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

## ☑ 성폭력 고소과정에서의 2차 가해 체크리스트

-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에 관한 내용과 상관없이 불필요한 비난조의 질문을 받았나요?
- 평소의 품행, 평판, 직업, 성관계 이력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받았나요?
- 왜 사진/동영상을 찍었는지 반복적으로 물어보았나요?
- 증거물을 검토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담당 수사관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둘러보며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을 했나요?
- 반말을 사용하거나, 무시하는 태도로 위압적인 수사를 했나요?
-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고지 및 절차 안내를 잘 받았나요?
-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나 진술 조력인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나요?
- 미리 조치를 부탁했는데도 소환 과정에서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나요?
-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라는 압력을 받았나요?
- 수사관이나 검사, 변호사를 통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았나요?

-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바로 문제제기합니다.
-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 청문감사실, 검찰 피해자 지원실, 국민신문고,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 📖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

- ✓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.  
예 : 원래 그런 촬영물을 찍으면 위험한데 왜 찍었어요?
- ✓ 가해자를 대변하거나 두둔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.  
예 :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유포는 안할 것 같던데요.
- ✓ 피해자의 행실 등 사건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.  
예 : 평소 행동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.
- ✓ 사이버성폭력 피해 사건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.  
예 : 연인 간에 이런 일도 있고, 저런 일도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신고를 하나요?
- ✓ 가해자를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며, 신고의지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.  
예 : 원래 이런 사건은 가해자 못 잡아요. 진행해봤자 헛수고예요.
- ✓ 촬영물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할 때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성폭력피해자로서 신고자를 보호하며 증거물 확보를 진행합니다.
- ✓ 성폭력과 사이버 범죄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수사관으로 배치합니다.
- ✓ 해당 신고가 성폭력임을 잊지 말고,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들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.